

# 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

제정 2003. 5. 1. 규칙 제395호  
개정 2006. 7.31. 규칙 제480호  
2012. 3.28. 규칙 제596호  
2013.10.25. 규칙 제632호  
2020.11.23. 규정 제82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23조에 규정된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처장과 각 학문계열을 대표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 
<개정 2013.10.25., 2020.11.23.>

-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통리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- ② 간사는 교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**제7조(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교육과정개선위원회)** ①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·심의하기 위해서는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별로 교육과정 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10.25>

- ②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10.25>

1.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단, 전임교원 수가 7명 미만의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에서는 부족한 위원 수 만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3.10.25>
  2. 위원장은 학과장 및 교양교직과정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3.10.25>
- ③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. <개정 2013.10.25>
1.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교육과정의 편성, 개편,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3.10.25>
  2. 본교 각 이수구분별 졸업 이수 학점에 관한 사항
  3. 기타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교육과정개선과 관련된 사항 <개정 2013.10.25>

④ 학과 및 교양교직과정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3.10.25>

**부 칙(규칙 제395호, 2003. 5. 1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규칙 제480호, 2006. 7. 31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규칙 제596호, 2012. 3. 28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제632호, 2013. 10. 25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교학처”를 “교무처”로 한다.